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0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상 ‘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(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)’으로 과태료 2억1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

◦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- (전북)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xx.x.xx.~20xx.x.xx. 기간 중 OOO 등 ◑명에 대하여 ◑건, ◎◎억 ◎◎백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상*이 아닌 부모, 배우자 등 가족 ◑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

*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등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○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